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70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이학영 · 김영배 · 이인영
강득구 · 김성환 · 박정현
박민규 · 염태영 · 김현정
박희승 · 강준현 · 한민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50조의2제5항).

법률 제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적으로”를 “취할 목적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① ~ ④ (생략)</p> <p>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u>목적으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3. (생략)</p>	<p>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u>취할 목적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u> ----- ----- -----.</p> <p>1. ~ 3. (현행과 같음)</p>